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

책임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2012.4.17)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012.3.21, 공포·시행)

○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현행
<p>제8조 (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u>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u>)은 법령의 <u>범위 안에서</u> <u>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u></p> <p>② 학칙의 <u>기재사항 및 제정절차</u>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u>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u>)은 법령의 <u>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u></p> <p>② 학칙의 <u>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u>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2012.4.17, 국무회의 통과)

○ 주요 내용

<p>■ 두발·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에 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9조제1항의 학칙 기재사항으로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명시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주요 항목인 두발·복장 규칙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교사 개인의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두발·복장 등을 지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교과부 입장) ○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동 시행령에 위반되어 실효됨(※교과부 입장) <p>■ 학칙 제·개정시 학생·학부모·교원의 사전 의견수렴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학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때는 미리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정 ○ 현행 시행령이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름(※교과부 입장)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p> <p>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p>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u>학생</u>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p> <p>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p>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u>학생, 학부모, 교원</u>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 우리교육청 입장

■ 학칙에 두발 규정을 두더라도 조례에 의해 두발 규제는 불가함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개정안의 학칙기재 신설 내용은 본래 학칙으로 정할 수 없었던 사항이 아니고 단지 학칙의 필수기재 사항으로 구체화한 것임.

서울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가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과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학교생활규정 포함)에 기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 아님.

<두발>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 관련 규정을 학칙에 정하더라도, 조례(12조 2항)에 반하는 두발에 대한 규제는 무효라고 할 것임.

<복장>에 대해서는 조례(12조 2항)에 학교규칙으로 제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어 복장에 대해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학칙에 둘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조례(13조 2항)에 의해 학칙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사항임. 조례에 의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거나 학생의 동의를 얻는 방법, 절차,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 역시 학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역시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조례(13조 4항)에서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학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시행령이 규정한 것은 오히려 조례내용과 부합함.

결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학칙의 필수기재 사항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 자체가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된다고 볼 수 없음.

■ 학칙 제·개정에 있어서 당사자(학생)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함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 및 권리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학생의 견해가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개정안보다는 현행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더 적절함. 학부모와 교원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사항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항목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항목과 달리 학생 포상 및 징계, 학생의 두발·복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운영 등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특별히 존중되어야 하는 사항들임.

이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등은 학생 인권 존중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제 12 조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견해에 대한 정당한 비중이 주목해야 할 것임.

따라서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견해에 우선적인 비중이 두어져야 하며 학부모와 교사는 지원,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임

■ 서울학생인권조례 조항의 실효 주장(※교과부)에 대한 입장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동시행령에 위반되어 실효된다.
(교과부 보도자료, 2012.4.16)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이라는 형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학칙이 어떠한 내용이어야 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

-즉, 시행령은 학생의 용모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이라는 형식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학칙의 내용에 관하여는 조례 등 하위규범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가 학칙의 내용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실효되지 않음.

-

-